

부가가치세의 절감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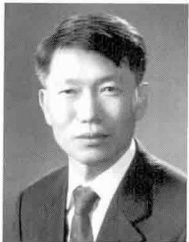
이번 호에는 재화나 용역을 구입함에 있어 제기되는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있는 세법상의 규정을 살펴보고자 한다(동물약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대해서는 지난 4월 호에 게재하였기에 생략함).

1.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세법에 축산용 시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없는 영세율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축산시설을 구입할 때에는 영세율적용대상인지를 확인하고 영세율의 대상임에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을 제시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영세율의 적용대상

1. 육추기
2. 양계용케이지
3. 축산급이기(2008.2.22. 개정)
6. 자동급수기
7. 낱플
8. 부리절단기
9. 포유기
10. 양돈케이지
13. 이표기
16. 임신진단기
17. 음수투약기
18. 목책기
20. 집란기
21. 계란선별기(2008.2.22. 개정)
24. 집란벨트
25. 부화기
26. 착유기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및 석사 학위 취득
- 공인회계사, 세무사(1986년 취득)
- 안건회계법인 근무(1984년~1991년)
- 개인사무소 운영(1991년~2000년)
- 화인경영회계법인 송파지점 대표 (2000년~2002년)
- 대현회계법인 대표이사(2002년~현재)

송 재 현 공인회계사/세무사
대현회계법인

- 29. 원유냉각기(2008.2.22. 개정)
- 31. 사료배합기
- 32. TMR배합기
- 33. 사료절단기
- 34. 싸이로
- 36. 사료저장탱크
- 37. 축산분뇨제거기
- 38. 축산용 정화조
- 39. 축산분뇨용 교반기
- 40. 축산용 분뇨펌프
- 41. 축산분뇨고액분리기
- 43. 축산분뇨발효건조기
- 44. 축산분뇨살포기
- 45. 축산분뇨저장탱크
- 46. 축산분뇨포장기
- 47. 산란상
- 48. 난좌
- 49. 바닥재(플라스틱, 콘스라트재에 한함)
- 50. 사료통
- 51. 별통(2006.2.9. 신설)
- 52. 채밀기(採蜜器, 2006.2.9. 신설)
- 53. 소초(巢礎)세트(소초광(巢礎筐)·사양기(飼養器) 및 격리판으로 구성된 것을 말함)
- 54. 사료법에 의한 사료

이상의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바,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 자동급이기 등 축산시설을 구분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받도록 한다.

특히 축분처리시설을 건축할 경우 분뇨처리시설 및 분뇨저장탱크까지 영세율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철근콘크리트로 제작하는 것도 영세율의 대상이 된다.

또한 이러한 축산시설을 누구에게 공급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모두 영세율의 대상이 된다. 실무

적으로 축산시설을 일반 건설업자가 공사하다보니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경우 위의 규정을 제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부가가치세의 면세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재화와 용역 중 축산업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가공되지 아니한 축산물
- ②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 ③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 ④ 농지 및 목장용지의 임대용역

이상의 규정에 따라 병아리를 구입하는 것, 수의사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특히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과 가축분뇨처리에 대한 용역(분뇨의 해양투기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없는 계산서를 증빙으로 받아야 한다.

3. 축사의 건축

축사를 건축함에 있어 건축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 건축비의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며, 이러한 현실이다 보니 축사를 건축하면서 건축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결국 지급한 부가가치세

를 환급받기 위해 축사를 임대용으로 건축하는 방법을 취하게 되는데, 축사는 남편명의로 건축하고 축산업은 아내의 명의로 하는 경우나, 축사는 사업주명의로 건축하고 축산업은 법인명의로 수행하는 형태로 만들어 일단 축사의 건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임대사업자로 세무신고하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법이 세무상 유리한지를 살펴보면 우선 축사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 분기마다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축사의 부속토지인 목장용지에 대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납부하게 되는데 적절한 임대료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회통념상 적절한 임대료(건물가액의 4%~5% 정도)를 책정하고 이에 대한 10%를 세금으로 납부하면 될 것이다.

또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물론 수입하는 임대료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판단의 기준은 부가가치세법상 10년후에 임대사업자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환급받는 부가가치세액과 10년간 납부하게 되는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액을 비교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축산업을 법인으로 영위하고 축사를 개인으로 건축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계산상으로는 유리하다.

하지만 축산업자의 재무제표에 축사가 사업용자산으로 계상되지 않는다거나 축사를 임대용으로 신고하고 있는 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4. 세금계산서의 수취의무

전년도 매출액(세무신고된 매출액을 의미함)이 3억원 이상인 축산업자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2%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데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데, 세법상의 세액만을 생각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2%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대신 다른 증빙(계약서, 거래명세서 등)을 수취하고 반드시 거래대금을 사업주 통장에서 상대방에게 계좌이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5. 세법의 개정

축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혜택을 주는 대신 각종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에 부담하는 부가가치세가 사업주의 부담이 되어 그만큼 생산원가를 증대시키는 문제가 있는 바, 개방화에 따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덜어 주는 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축사건축용역, 위탁사육수수료 등에 대해 면세해 주고, 영세율대상에 더 많은 축산시설이 포함되도록 세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보며, 이러한 의견을 모든 축산인들이 힘을 모아 정부에 건의해야 할 것이다. 

■ 문의 : (02)552-6100 대한회계법인